

## 부천대장 제1·제2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투자 제안 접수 공고

부천시의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한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부천대장 제1·제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에 우수기업의 투자 제안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7월 6일

# 부 천 시 장

### I 산업단지 개요

#### □ 개요

- 단 지 명 : 부천대장 제1·제2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대장산단")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대장동, 원종동 일원
- 지정면적 : 560,554㎡

구분	합계	제1 도시첨단산업단지	제2 도시첨단산업단지
합계	560,554㎡	334,387㎡	226,167㎡
산업시설용지	344,421㎡	206,861㎡	137,560㎡
산업시설 외 용지	216,133㎡	127,526㎡	88,607㎡

- 사업기간 : 2024년(산업단지계획 승인일) ~ 2029년
- 시 행 자 :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



## II 신청자격 및 대상필지

### □ 추진방향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제4항 제1호 및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재정이 건전하고 단지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우수기업을 모집하고자 함

### □ 모집기간 : 2026. 7. 6. ~ 12. 31. (179일간)

### □ 신청자격

-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정밀기계, 친환경 기후테크, 미래차, 바이오·헬스, ICT 산업 등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최근 3개년 매출 가중평균이 3,500억 원 이상인 기업**
- 관계 법령, 지구계획, 산업단지계획,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할 것

공고문에 기재된 산업단지 관련 사항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69호)”을 우선 적용합니다.

※ 지구계획, 산업단지계획, 관리기본계획이 상충하는 경우 지구계획 우선 적용

- 모집공고일 현재 심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b>심사 제외 대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계약 전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지원)가능</li><li>○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단, 선정 후 계약 전 채무 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은 신청 가능</li><li>○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li></ul>
-------------------------	---

### □ 업종 배치계획

- 산업단지 활성화 및 공공주택지구 내 산업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A 블럭"과 "B 블럭"으로 구분
  - (A 블럭) 첨단제조업 +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 (B 블럭)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 대상 필지 : 11개 필지(6,500㎡ 이상)

○ 부천대장 제1 도시첨단산업단지

구분	획지	면적(㎡)	조성원가(원/㎡)	건폐율(%)	용적률(%)	고도제한(m)
산업 1-2	-2	15,724	2,956,724	60	350	건축높이 8층 이하 또는 40m이하 (해발고도 57.86m)
산업 1-3		92,832				
산업 1-5	-1	6,896				
	-2	7,014				
	-3	9,919				
	-4	7,393				



○ 부천대장 제2 도시첨단산업단지

구분	획지	면적(m <sup>2</sup> )	조성원가(원/m <sup>2</sup> )	건폐율(%)	용적률(%)	고도제한(m)
산업 2-4	-1	7,006	3,093,538	60	400	건축높이 8층 이하 또는 40m이하 (해발고도 57.86m)
	-2	8,916				
산업 2-5	-1	7,714				
	-2	7,205				
산업 2-6		9,650				



### Ⅲ 입주 가능 업종

#### □ 첨단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 제외	C24	1차 금속 제조업
C2011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C2412	철강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C2012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C2422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C2013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C2429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C2020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C2042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049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110	기초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C2229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지식기반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E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M71	전문서비스업
J58	출판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
J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J61	우편 및 통신업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N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J63	정보 서비스업	N76	임대업(부동산업 제외)
M70	연구개발업	P85	교육 서비스업

## IV 허용용도 및 불허용도

### □ US2(민간혁신) 허용용도

#### ○ 대상필지 : 산업 1-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라목 기숙사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목 집회장 중 회의장, 라목 전시장
  - 제10호 교육연구시설(나목 교육원, 다목 직업훈련소, 마목 연구소에 한함) 및 부속용도
  - 제14호 업무시설 중 나목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입주기업체 소속 근로자 사용분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함. (기숙사 분양은 불허함)
    - ※ 공동주택 중 기숙사,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 전시장,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의 바닥면적 합계는 지상층 연면적에 30% 미만으로 함.

### □ US1(혁신산업) 허용용도

#### ○ 대상필지 : 산업 1-2, 산업 1-5, 산업 2-4, 산업 2-5, 산업 2-6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나목 교육원, 다목 직업훈련소, 마목 연구소에 한함) 및 부속용도
  - 제14호 업무시설 중 나목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한하며, 동 시설의 규모는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10%이하로 설치할 수 있음.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산업2-4, 산업2-5에 한하여 허용함.
    -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되,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과 지식산업센터 내 생산활동 지원시설(지상층 연면적의 10% 이하) 바닥면적 합계는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불허용도(공통)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용지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US1만 해당),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허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1~4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지정악취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1~4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V 선정 및 평가 방법

### □ 선정절차

- (1단계) 투자 제안서 접수 → (2단계) 정량적 평가(市 담당부서) → (3단계) 정성적 평가(부천시 기업유치위원회) → (4단계) 입주 협약 → (5단계) 입주계약 및 토지매매계약

선정절차		내용
1단계	투자 제안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외 대상 검토</li> <li>•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 서류 검토</li> </ul>
2단계	자체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부서에서 평가표에 따라 '정량적 평가' 시행</li> <li>• 기준점수 50% 획득한 기업에 한하여 "기업유치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li> </ul>
3단계	기업유치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정된 기업에 대해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정성적 평가' 시행 후 협약 대상자 선정</li> </ul>
4단계	입주협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권자(부천시)와 입주협약 체결</li> </ul>
5단계	입주계약 및 토지매매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권자(부천시)와 입주계약 체결</li> <li>• 사업시행자(LH)와 토지매매계약 체결(수의계약)</li> </ul>

## □ 선정방법

- 필지별 최고 득점자가 협약 대상자로 선정되며, 최고 득점자가 포기할 경우 후 순위 득점자를 협약 대상자로 선정
- 최종 득점이 600점 미만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단독 신청 포함)
- 600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격 대상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점자 발생 시 1차로 정성평가 중 "연구개발관리 운영계획" 평가 점수가 높은 자, 2차로는 정량평가 중 "재무안정성"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

## □ 평가방법

- 모집공고 마감 후(2027. 1. 1. 이후) 일괄 평가
  - 매출액 기준 3,500억 원 미만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 미만일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기준 : 정량적 평가(400점) + 정성적 평가(600점)
- 평가순서 및 평가위원
  - 1차 평가(정량적 평가) : 담당 부서
    - 기준 점수 50% 이상 충족 시 2차 평가 진행되며, 미만일 경우 투자 제안 반려(기업은 별도 통보)
  - 2차 평가(정성적 평가) : 부천시 기업유치위원회
    - 해당 기업에서 투자제안서 PT 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 요소별 최고·최저 점수를 평정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합산한 결과를 평가 점수로 보며,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 평가기준표

### ○ 평가기준표(총괄)

평가대상	평가요소	평가항목	배점
정량적 평가	기업역량	- 종합적 역량 · 매출액, 영업이익률, 기업상장여부	100점
	재무안전성	- 안전성 · 신용평가등급 · 부채비율, 유동비율,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200점
	연구개발능력	- 연구개발 능력 · 연구인력 비율, 연구개발투자비율 · 특허등록 보유현황 · 기업부설연구소 유무	100점
<b>소계</b>			<b>400점</b>
정성적 평가	개별 핵심업종 적합 여부	- 개별 핵심업종 적합여부	50점
	사업타당성	- 사업타당성 · 사업성분석 자료 및 근거, 총투자비, 연차별 투자비 규모 · 리스크 분석 및 관리계획	100점
	재원조달계획	- 재원조달계획 · 사업비 조달방안 우수성 · 사업비 조달방안의 실현가능성	150점
	개발계획 및 시설계획	- 시설계획 · 시설구성 계획, 조성추진계획, 신청면적의 적정성 - 건축계획 · 배치계획, 건축계획, 외부공간계획, 주차장계획 -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 - 건축물 완공 후 공간활용계획 · 필요시 관련 연구시설 이전을 위한 임대계획 등	100점
	연구개발 관리운영계획	- 연구개발계획 · 연차별 연구개발비 투입계획, 연구인력 확충 계획 등 - 기술의 상용화 계획 · 연구개발을 통한 결과물 상용화 - 기술의 발전 가능성 · 보유 기술의 발전 방향 등 - 동반성장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 계획 · 동반성장 및 산학연 교류 활동 · 기술공유 및 기업간 교류활동 계획	200점
<b>소계</b>			<b>600점</b>
<b>총계</b>			<b>1,000점</b>

○ 정량적 평가 세부 기준표

평가 요소	평가항목	평가방법(기준)	배점	평가척도				
기업 역량	매출액	· 최근 3개 회계연도 매출액 기중평균	40	3,500억 이상 ~ 7,100억 미만	7,100억 이상 ~ 1조700억 미만	1조700억 이상 ~ 1조4,300억 미만	1조4,300억 이상 ~ 1조7,900억 미만	1조7,900억 이상
				8이상~16미만	16이상~24미만	24이상~32미만	32이상~40미만	40
	영업 이익률	· (당기영업이익÷당기매출액)x100	40	0%이상 ~ 3.0%미만	3.0%이상 ~ 6.0%미만	6.0%이상 ~ 9.0%미만	9.0%이상 ~ 12.0%미만	12.0% 이상
				8이상~16미만	16이상~24미만	24이상~32미만	32이상~40미만	40
기업상장	· 한국거래소 기준	20	비상장	코스닥 상장	코스닥 상장	코스피 상장		
			0	16	18	20		
재무 안정성	신용평가 등급	· 국내신용평가사 회사채, 기업어음 등급	60	BB+ 이상	BBB- ~ BBB+	A- ~ A+	AA- ~ AA+	AAA~
				36	38,40,42	44,46,48	50,53,56	60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x100	40	400% 이상	400% 미만~ 300% 이상	300% 미만~ 200% 이상	200% 미만~ 100% 이상	100%미만
				24이상 ~28미만	28이상 ~32미만	32이상 ~36미만	36이상 ~40미만	4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x100	40	0 ~ 37.5%미만	37.5%이상 ~ 75.0%미만	75.0%이상 ~ 112.5%미만	112.5%이상 ~ 150%미만	150%이상
				24이상 ~28미만	28이상 ~32미만	32이상 ~36미만	36이상 ~40미만	40
총자산 증가율	· (당기총자산÷전기총자산) x100-100	30	0 ~ 3.75%미만	3.75%이상 ~ 7.5%미만	7.5%이상 ~ 11.25%미만	11.25%이상 ~ 15%미만	15%이상	
			18이상 ~21미만	21이상 ~24미만	24이상 ~27미만	27이상 ~30미만	30	
매출액 증가율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x100-100	30	0 ~ 3.75%미만	3.75%이상 ~ 7.5%미만	7.5%이상 ~ 11.25%미만	11.25%이상 ~ 15%미만	15%이상	
			18이상 ~21미만	21이상 ~24미만	24이상 ~27미만	27이상 ~30미만	30	
연구 개발 능력	연구인력 비율	· 공고일 현재 연구인력비율	40	5% 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 15%미만	15%이상 ~ 20%미만	20%이상
				24이상~28미만	28이상~32미만	32이상~36미만	36이상~40미만	40
	연구개발 투자비율	· 연구개발비(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른 연구개발투자액(매출액 대비))	40	0%이상 ~ 1.0%미만	1.0%이상 ~ 2.0%미만	2.0%이상 ~ 3.0%미만	3.0%이상 ~ 4.0%미만	4.0% 이상
				24이상~28미만	28이상~32미만	32이상~36미만	36이상~40미만	40
	특허등록 보유현황	· 공고일 현재 유효한 등록 누계	10	15건미만	15건이상 ~ 30건미만	30건이상 ~ 45건미만	45건이상 ~ 60건미만	60건이상
6				7	8	9	10	
기업부설 연구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여부	10	없음		있음			
			6		10			
소계		정량적 평가 총 점수 400점						

## VI 모집일정 및 접수방법

### □ 모집일정

구분		일정	장소
모집공고 기간		2026. 7. 6. ~ 12. 31.	부천시 홈페이지
접수 기한		2026. 12. 31. 18:00까지	부천시 전략담당관
대상자 선정	1차(정량적 평가)	접수 마감 후 1개월 이내	부천시 전략담당관
	2차(정성적 평가)	1차 평가 후 2개월 이내	부천시
입주협약 체결		2027. 6.까지	부천시
입주계약 체결 토지매매계약 체결		2029. 1. 예정	입주계약 : 부천시 토지매매계약 : LH

※ 상기 일정은 국가 정책, 市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장소 : 부천시 전략담당관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6층 (중동)
- 시간 : 09:00 ~ 18:00(토·일·공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

### □ 권장사항

- 사업계획서에 기업 상생 및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

## VII 제출서류 목록

### □ 제출사항

- 투자제안서 제출 시 원본 1부와 사본 30부(합계 31부) 및 원본 수록  
USB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붙임1) 및 관련 서식 참조(붙임2)

□ **제출서류 : 투자제안서(아래 서식 참조하여 작성)**

- (서식 1) 투자제안 신청서
- (서식 2) 서약서
- (서식 3) 인감 또는 서명(변경)신고서
- (서식 4) 투자 제안 신청자 현황
- (서식 5) 주주 현황
- (서식 6) 경영진 현황
- (서식 7) 총 사업비
- (서식 8) 총 사업비 조달계획
- (서식 9) 시설면적 산정표
- (서식 10) 연구개발인력 현황
- (서식 11) 특허등록 보유현황
- (서식 12)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전담부서 현황
- (서식 13) 도시형공장(제조시설) 운영계획(공장일 경우)

□ **별첨자료**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기업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
- 특허 관련 증빙자료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및 연구개발인력 증빙자료
- 재무제표확인원(원가명세서 포함)
- 최근 3년간('23년, '24년, '25년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 기타 관련 증빙자료

## □ 주의사항

- 사업계획서(부속서류 포함) 원본 수록과 같이 별첨자료의 경우, 각 자료별 PDF형식으로 상기 순서와 같이 USB에 별도 수록 후 추가 제출
- 사업계획서(부속서류 포함) 제출시 '원본'과 '사본'을 구별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박스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제출할 경우, 박스 등의 겉표면에 기업명, 수량을 각 표기 후 제출
- 신청서 제출 시 제출자(대리인)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 기업유치위원회 평가 시(2차 정성적 평가)

- 사업계획 관련 PT발표 자료 제본 20부 및 PT발표 자료 파일 수록 USB 제출
  - 2차 평가 당일 사업계획 등과 관련된 PT발표(10분) 및 질의응답(5분)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서 제출시 PT발표 자료 제본 20부 및 해당 PT발표 자료 전자파일(PPT, PDF)이 수록된 USB도 같이 제출
  - PT발표 자료 파일은 PPT, PDF 각 형식으로 모두 USB에 수록하여 제출하며 발표 당일에는 PDF 형식을 기준으로 발표
- 입주협약 대상 기업 : 이행동의서 1부

## **VIII** 유의사항

**가. 투자제안서 작성 전 입주 가능 필지 및 업종에 관해 담당 부서와  
필히 협의할 것**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음**

## □ 투자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각 투자제안서 제출기업(이하 "제출기업"이라 한다)은 현재 진행하는 사업영역 혹은 계획 중인 사업영역에 해당하는 용지를 신청
- 제출기업은 사전에 필히 현장을 확인하고 기타 제반 사항을 확인
- 제출기업은 관계 법령, 부천시 조례, 산업단지계획, 공고문, 지구단위계획 등에 명시한 사항, 관리기본계획(고시예정), 기타 용지매입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투자제안서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부천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청자가 이를 승낙하고 투자제안서를 제출했으며 계약서에 위 내용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제출기업은 원칙적으로 법인대표자 명의이어야 함

## □ 무효처리

-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을 한 경우
-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부정한 자료(위조, 변조, 허위 등)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 부천시가 협의를 통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대상으로 선정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협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 □ 협의 관련 유의사항

- 입주협약의 확정을 위해 선정대상 기업은 부천시와 협의 개시 전 협의에 참여할 인원, 명단, 협의할 내용 및 협의기한에 대해 사전 협의 필요
- 선정 이후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선정 취소, 입주협약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투자제안서 제출기업이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를 요청할 경우 요청기업의 접수만을 공개함

- 선정 대상기업은 부천시가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함
- 선정 대상기업은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기타사항

- 토지 공급가격은 사업시행사가 산정한 조성원가로 하며, 토지 매매 계약 관련 사항은 향후 사업시행자의 처분계획 기준 적용
- 대장산단은 부천대장지구 내 중복지정된 산업단지이자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로, 협약체결 이후에도 국가 정책 또는 산업단지 계획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 : 부천시 전략담당관 첨단산업조성팀 ☎ (032-625-2745~6)

소관부서	전략담당관	담당자	주무관 박태양	전화번호	032-625-2746
------	-------	-----	---------	------	--------------